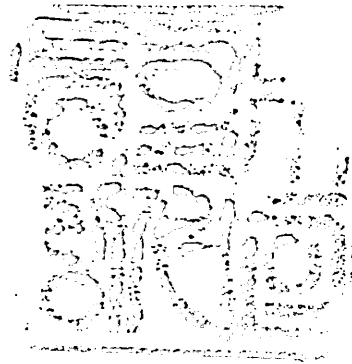


# 남북교류협력법규집

1997



통 일 원



# 목 차

<p>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3</p> <p style="padding-left: 20px;">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p> <p style="padding-left: 20px;">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padding-left: 20px;">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II.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 방법 ..... 63</p> <p>III. 남북한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 67</p> <p>IV.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 75</p> <p>V. 남북한간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고시 ..... 89</p> <p>VI. 남북교역물품 통관 규정 ..... 95</p> <p>VII.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107</p> <p>VIII.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 117</p>	<p>IX.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 125</p> <p>X. 남북협력기금법 ..... 141</p> <p style="padding-left: 20px;">1. 남북협력기금법</p> <p style="padding-left: 20px;">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p> <p style="padding-left: 20px;">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p> <p>XI.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리 규정 ..... 165</p>
---	--



# 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 목 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 11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2 조 정의 ..... 11	제 1 조 목적 ..... 11	제 1 조 목적 ..... 11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	제 2 조 출입장소 ..... 11	제 2 조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19
제 4 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 12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 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 22
제 5 조 협의회의 구성 ..... 13	제 3 조 협의회의 회의 ..... 14	제 4 조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 23
제 6 조 협의회의 기능 ..... 14	제 4 조 의견의 청취 ..... 15	제 5 조 방문기간연장신청서 ..... 24
제 7 조 협의회의 의사 ..... 14	제 5 조 수당등 ..... 15	제 6 조 북한방문신고서등 ..... 26
제 8 조 실무위원회 ..... 16	제 6 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16	제 7 조 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 27
제 9 조 남·북한 왕래 ..... 18	제 7 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 17	제 8 조 출입신고서등 ..... 30
제10조 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 29	제 8 조 준용규정등 ..... 17	제 9 조 협력사업자승인증 ..... 37
제11조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 30	제 3 장 남북한 왕래등	제10조 수송장비운행승인서 ..... 49
제12조 교역당사자 ..... 32	제 9 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 18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 33	제10조 증명서의 발급신청 ..... 19	
제14조 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 35	제11조 대리신청 .....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 36	제12조 증명서발급의 협의 ..... 22	
제16조 협력사업자 ..... 37	제13조 편의제공 ..... 23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 41	제14조 증명서의 재발급 ..... 23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 43	제15조 동반자녀의 병기 ..... 24	
제19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 46	제16조 방문기간 ..... 24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 47	제17조 증명서의 반납등 ..... 25	
제21조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 47	제18조 재외국민의 북한왕래 신고 ..... 26	
제22조 통신역무의 제공 ..... 49	제19조 접촉승인신청 ..... 27	
제23조 검역등 ..... 51	제20조 특례조치 ..... 29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 52	제21조 출입심사공무원 ..... 30	
제25조 협조요청 ..... 52	제22조 출입심사 ..... 30	
제26조 다른법률의 준용 ..... 53	제23조 심사확인 ..... 31	
제27조 벌칙 ..... 58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 32	
제28조 양벌규정 ..... 60	제 4 장 교 역	
제29조 형의 감경등 ..... 61	제25조 교역당사자의 지정 ..... 32	
제30조 북한주민의제 ..... 61	제26조 반출·반입의 승인신청 ..... 33	
	제27조 변경승인사항등 ..... 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 35 제29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 36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 37 제31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 38 제32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 39 제33조 취소절차 ..... 40 제34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 41 제35조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 41 제36조 협력사업의 승인 ..... 42 제37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 43 제38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 44 제39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 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 장 보 칙	
	제40조 결제업무취급기관의 지정요건 · 46	
	제41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 46	
	제42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 47	
	제43조 운행의 승인기준 ····· 47	
	제44조 협의등 ····· 48	
	제45조 운행승인서의 발급 ····· 49	
	제46조 통신역무의 제공 ····· 49	
	제47조 통신역무의 요금 ····· 50	
	제48조 통신역무의 취급절차 ····· 50	
	제49조 수당등 ····· 52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 53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 5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 56 제53조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 ..... 5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 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li> <li>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li> <li>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총 칙</b></p> <p>제 1 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문점</li> <li>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li> <li>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개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총 칙</b></p>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p> <p>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 4 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p>	<p>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 장관이 지정하는 곳</p> <p>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 5 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통일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제 6 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li> <li>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li> <li>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li> <li>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li> <li>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li> <li>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li> <li>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제 7 조 (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p>	<p>제 3 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협회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 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 5 조 (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 8 조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6 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 7 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의안의 사전 검토·조정</li> <li>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li> <li>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li> <li>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제 8 조 (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 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 9 조 (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p> <p>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3 장 남북한 왕래등</p> <p>제 9 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p> <p>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p> <p>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p> <p>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8면</p> <p>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8면</p> <p>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증명서번호</p> <p>2. 성 명</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3. 성 별</p> <p>4. 생년월일</p> <p>5. 방문목적</p> <p>6. 방문기간</p> <p>7. 신 장</p> <p>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p> <p>제10조 (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li> <li>2. 신원진술서</li> <li>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4매</li> </ol>	<p>제 2 조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p> <p>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p> <p>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p> <p>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p> <p>③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 (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li> <li>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li> </ol>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p> <p>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p> <p>나. 초청장 사본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p> <p>제12조 (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p>	<p>제 3 조 (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0인 이상의 단체 왕래</li> <li>2. 정치적 목적의 왕래</li> <li>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li> </ol> <p>제13조 (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14조 (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 4 조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1. 재발급 신청서</p> <p>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 2매</p> <p>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p> <p>제15조 (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p> <p>제16조 (방문기간) ①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제 5 조 (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영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7조 (증명서의 반납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③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출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8조 (재외국민의 북한왕래 신고)</p> <p>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방문신고</li> <li>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li> </ol> <p>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p>	<p>제 6 조 (북한방문신고서등)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방문결과보고서</li> <li>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li> </ol> <p>제19조 (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p> <p>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주민접촉신청서</li> <li>2. 신원진술서</li> </ol>	<p>제 7 조 (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0조 (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 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li> <li>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li> <li>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li> <li>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li> <li>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li> </ol> <p>제20조 (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 여야 한다.</p> <p>제11조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 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 아야 한다.</p>	<p>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 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 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p> <p>제21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 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 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한다.</p> <p>제22조 (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원확인</li> <li>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li> <li>3. 검역</li> </ol>	<p>제 8 조 (출입신고서등) ①남한과 북한 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 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4.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p> <p>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은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p> <p>제23조 (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p>	<p>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p> <p>③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 (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p>	<p>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교 역</p> <p>제25조 (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6조 (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p> <p>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p> <p>④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형태·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p> <p>제27조 (변경승인사항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li> <li>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li> </ol>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4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 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p>	<p>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p> <p>②통일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8조 (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 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절차</p> <p>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29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6조 (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협력사업</b></p> <p>제30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li> <li>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u>요건을</u> <u>갖출 것</u></li> </ol>	<p>제 9 조 (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31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p> <p>③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32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li> <li>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li> <li>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li> <li>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li> <li>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li> </ol>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실적이 없는 경우</p> <p>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p> <p>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33조 (취소절차)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li> <li>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li> <li>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li> <li>4. 북한 당국의 확인서</li> <li>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li> </ol> <p>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p> <p>제35조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할 것</li> </ol>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p> <p>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p> <p>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p> <p>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p> <p>제36조 (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u>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u>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u>30일 이내</u>에 <u>협의회에 상정</u>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p> <p>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p>	<p>의 장과 합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p> <p>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제37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p> <p>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협력사업자에게</u> 조정을 명할 때에는 <u>중요한 사항에</u>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38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li><li>2. 사업의 착수</li><li>3. 사업진행상황</li><li>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li><li>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li><li>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ol>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0일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9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 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 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장 보 칙</b></p> <p>제40조 (결제업무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은행</li> <li>2. 한국수출입은행</li> <li>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li> <li>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li> </ol> <p>제41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p>	<p>②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p> <p>제42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3조 (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소지할 것</p> <p>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p> <p>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p> <p>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p> <p>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p> <p>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제44조 (협의등) ①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22조 (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p>	<p>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통일원장관은 선박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5조 (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p> <p>제46조 (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p>	<p>제10조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p> <p>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통상우편물</li><li>2. 소포우편물</li><li>3. 유선전기통신</li></ol> <p>제47조 (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p> <p>제48조 (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23조 (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p>	<p>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5조 (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9조 (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p> <p>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p>	<p>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p> <p>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p> <p>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환관리법</li> <li>2. 의자도입법</li> <li>3. 한국수출입은행법</li> <li>4. 수출보험법</li> <li>5. 대외경제협력기금법</li> <li>6. 법인세법</li> <li>7. 소득세법</li> <li>8. 조세감면규제법</li> <li>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li> <li>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li> </ol>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은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국세기본법</li> <li>3. 국세징수법</li> <li>4. 부가가치세법</li> <li>5. 특별소비세법</li> <li>6. 주세법</li> <li>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li> <li>8. 교육세법</li> <li>9. 식물방역법</li> <li>10. 가축전염병예방법</li> </ol> <p>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p> <p>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p> <p>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p> <p>제52조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53조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p> <p>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p>	<p>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p> <p>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p> <p>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p> <p>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p> <p>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 국민</p> <p>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p>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p>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p> <p>제29조 (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제30조 (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생략〉</p>





## II.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원고시 제90-1호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다.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마.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나.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

보에 공하는 물품

- 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라. COCOM 수출 규제품목
  - 마. 보호문화재등
  - 바.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 가.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나. 검역대상 물품
    - 다.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
    - 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반출·입 규제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7.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고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Ⅲ.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90-647호



# 목 차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71</p> <p>제 2 조 적용대상 .....71</p> <p>제 2 장 휴대품 검사</p> <p>제 3 조 휴대품신고서 제출 .....71</p> <p>제 4 조 화폐등의 신고 .....71</p> <p>제 5 조 휴대품 검사 .....71</p> <p>제 6 조 검사방법 .....72</p> <p>제 3 장 휴대품 반출입</p> <p>제 7 조 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72</p> <p>제 8 조 반출입 규제물품 .....72</p> <p>제 9 조 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72</p> <p>제 4 장 과 세</p> <p>제10조 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73</p> <p>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등</p> <p>제11조 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73</p>	<p>제12조 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73</p> <p>부 칙 .....73</p>
---	---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통일원고시)에 따라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상대방 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은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남·북한 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경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장 휴대품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화폐등의 신고)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여행자수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등록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 6 조(검사방법)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반출입

제 7 조(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문목적, 체류기간, 방문자의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휴대품은 반출입을 허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

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금지물품

②다음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된 반출입 제한물품
2.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외국화폐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등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7조에 규정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휴대품보관증(별지 제2호 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반출입이 규제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중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4 장 과 세

제10조(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때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도 포함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등

제11조(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남·북한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되는 물품은 일반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과 같이 처리한다.

제12조(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IV.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원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원고시 제91-2호

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4호

개정 1995. 1. 3 통일원고시 제95-1호

개정 1996. 3. 5 통일원고시 제96-1호

개정 1997. 4. 1 통일원고시 제97-1호



# 목 차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 1 조 목 적.....	79
제 2 조 품목분류.....	79
제 3 조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79
제 4 조 반출·입 포괄승인품목.....	79
제 5 조 반출·입의 승인.....	80
제 6 조 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80
부 칙 .....	80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품목분류)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 3 조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교역대상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본다.

1.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2. 반출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설비
  - 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

계교역으로서 대응물품이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나. 1회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의 반출

다. 설비 반출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등으로 상계하는 경우

3. 반입물품으로서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필름 포함), 엽서·연하장

4.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계기한 품목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포괄승인의 범위를 벗어나 반출·입하는 품목

제 4 조 (반출·입 포괄승인품목) ①교역대상물품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이외의 품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1. 유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2.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방법이 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부 칙

②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은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승인받은 반출·입은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반출·입의 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출·입은 통일원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 전략물자의 반출·입은 통일원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국방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등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의 반출·입은 별도의 개별적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입 승인 절차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20	0301-99-4000	돔(활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21	0301-99-9050	농어(활어)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22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23	0303-79-3000	갈치(냉동)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24	0303-79-6000	조기(냉동)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25	0303-79-9093	홍어(냉동)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26	0303-79-9099	기타(냉동)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27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28	0307-49-1020	오징어(냉동)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29	0307-59-1020	낙지(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30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 분 0.5% 이하)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31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이하)	42	0404-10-1090	유장분말 기타
32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43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33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 분 1.5% 초과)	44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34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초과)	45	0408-99-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닭의 것
35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46	0409-00-0000	천연꿀
36	0402-91-1000	무당연유	47	0410-00-3000	로얄제리
37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48	0506-90-2000	골분
38	0402-99-1000	가당연유	49	0701-10-0000	감자(종자용)
39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50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40	0403-90-1000	버터밀크	51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41	0404-10-1010	유장분말	52	0703-20-0000	마늘(신선·냉장)
			53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4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5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6	0712-20-0000	양파(건조)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목
57	0712-90-1000	마늘(건조)		74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58	0712-90-2091	단옥수수(종자용)		75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59	0712-90-2092	단옥수수(기타)		76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60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77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신선·건조)	
61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78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그레이프 푸르트 이외/신선·건조)	
62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79	0810-90-3000	대추(신선)	
63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80	0813-40-2000	대추(건조)	
64	0714-10-2010	매니옥 칩(건조)		81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 이하 포장)	
65	0714-20-1000	고구마(신선)		82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66	0714-20-2000	고구마(건조)		83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67	0714-20-3000	고구마(냉장)		84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68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85	0910-10-0000	생강	
69	0714-90-9090	서류(기타)		86	1002-00-1000	호밀(종자용)	
70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87	1003-00-1000	맥주맥	
71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88	1003-00-9010	겉보리	
72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89	1003-00-9020	쌀보리	
73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90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106	1102-90-1000	보리가루
91	1004-00-1000	귀리(종자용)	107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2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108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3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109	1103-12-0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4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110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5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111	1103-14-0000	쌀(분쇄물 및 조분)
96	1006-10-0000	벼	112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97	1006-20-1000	메현미	113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98	1006-20-2000	찰현미	114	1103-21-0000	밀(펠리트)
99	1006-30-1000	맵쌀	115	1103-29-1000	쌀(펠리트)
100	1006-30-2000	찰쌀	116	1103-29-2000	보리(펠리트)
101	1006-40-0000	쇄미	117	1103-29-9000	곡물(기타/펠리트)
102	1007-00-1000	수수(종자용)	118	1104-11-0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3	1008-10-0000	메밀	119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4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120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5	1102-30-0000	쌀가루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121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37	1108-20-0000	이눌린
122	1104-21-0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38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3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39	1201-00-2000	대두(식용)
124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40	1201-00-9000	대두(기타)
125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41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6	1104-2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이외)	142	1202-20-0000	낙화생(탈각)
127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43	1207-40-0000	참깨
128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44	1211-20-1100	수삼
129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45	1211-20-1210	백삼(본삼)
130	1107-20-1000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146	1211-20-1220	백삼(미삼)
131	1108-11-0000	밀 전분	147	1211-20-1240	백삼(잡삼)
132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48	1211-20-1310	홍삼(본삼)
133	1108-13-0000	감자 전분	149	1211-20-1320	홍삼(미삼)
134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50	1211-20-1330	홍삼(잡삼)
135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51	1211-20-2210	홍삼분
136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52	1211-20-2220	홍삼 타블렛·캡슐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153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68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 가루의 것)
154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69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 리의 것)
155	1211-20-9200	인삼종자	170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 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56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71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57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72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58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73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59	1302-19-1210	홍삼정	174	1902-19-2000	당면
160	1302-19-1220	홍삼정분	175	2008-11-9000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1	1302-19-1290	홍삼엑스(홍삼정·홍삼정분 이외)	176	2009-11-1000	오렌지주스(냉동/농축)
162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77	2009-11-9000	오렌지주스(냉동/농축 이외)
163	1702-11-1000	유당	178	2009-19-1000	오렌지주스(냉동 이외/농축)
164	1702-19-1000	유당	179	2009-19-9000	오렌지주스(냉동 이외/농축 이외)
165	1702-90-1000	인조꿀	180	2009-30-9000	감귤류주스(단일 감귤류주스/레몬·라임 이외)
166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 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7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 은 제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목
181	2103-90-9040	메주	193	3505-10-3000	배소전분
182	2106-90-3021	홍삼차	194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83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95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84	2106-90-9091	벌꿀 조제품의 것	196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5	2207-10-90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조주정 이외/알콜 용량 80% 이상/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197	3505-20-1000	전분 글루
186	2301-10-1000	육, 설육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198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87	2309-90-1091	기타 배합사료(대용유의 것)	199	3505-20-9000	기타 글루
188	2309-90-2010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 주로 한 것)	200	5001-00-0000	누에고치
189	2309-90-2020	보조사료(향미제 주로 한 것)	201	5002-00-1020	생사(백잠사/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
190	2309-90-2099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향미제 이외 주원료)	202	5002-00-1030	생사(백잠사/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
191	2309-90-9000	사료용 조제품(개·고양이용 이외/배합 사료·단미·보조사료·사료첨가제 이외)	203	5002-00-1040	생사(백잠사/28.89 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
192	2309-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204	5002-00-1050	생사(백잠사/36.67 데시텍스 초과)
			205	5004-00-0000	견사



## V.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 6. 20 통일원고시 제94-1호



# 목 차

##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 1 조 운행승인의 신청 .....	93
제 2 조 대리승인신청 .....	93
제 3 조 변경승인신청 .....	93
제 4 조 추가자료 요구 .....	93
부 칙 .....	9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수송장비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조(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 2 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변경승인신청)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추가자료 요구) 통일원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Ⅵ.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 목 차

##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p><b>제 1 장 총 칙</b></p> <p>제 1 조 목적 .....99</p> <p>제 2 조 용어의 정의 .....99</p> <p>제 3 조 적용범위 .....99</p> <p style="padding-left: 20px;"><b>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b></p> <p>제 4 조 물품의 장치 .....99</p> <p>제 5 조 반입절차 .....100</p> <p>제 6 조 관세 .....100</p> <p>제 7 조 내국세등 .....100</p> <p>제 8 조 물품가격의 결정 .....100</p> <p>제 9 조 반출 및 환급절차 .....100</p> <p>제 10 조 구비조건등의 확인 .....101</p> <p>제 11 조 남북교역물품의 표시 .....101</p> <p>제 12 조 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의 준용 .....10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b></p> <p>제 13 조 원산지 확인 .....101</p> <p>제 14 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102</p> <p>제 15 조 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102</p> <p>제 16 조 원산지증명서 .....103</p> <p>제 17 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103</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보 칙</b></p> <p>제 18 조 심리의뢰 .....104</p> <p>제 19 조 반출입 통계 .....104</p> <p>제 20 조 보고 .....104</p> <p>제 21 조 준용규정 .....105</p>
--	---



##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 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 4 조(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여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제3-2-1조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제 6 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내국세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

한다.

제 8 조(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 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구비조건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출입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 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입승인면제물품통관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 3 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 13 조(원산지 확인)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면허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 14 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기준은 동일한 송화인과 수화인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 15 조(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국의 보세구역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 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

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항해일지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16 조(원산지증명서) ①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 17 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제 4 장 보 칙

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등에 대하여는 원산지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18 조(심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리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 표시 한 때

2.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 19 조(반출입 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실적(월별)

2.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심리의뢰(즉시)

남 북 교 역 물 품 통 관 규 정

3.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 21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생략>



## VII.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2호



# 목 차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처 리 에 관 한 규 정

제 1 조 목 적 .....	111
제 2 조 적용범위 .....	111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11
제 4 조 사업실적 인정범위 .....	112
제 5 조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112
제 6 조 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	113
제 7 조 협력사업자의 방북 .....	113
제 8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	113
제 9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등 .....	114
제 10 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	115
제 11 조 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	115
제 12 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	115
부 칙 .....	116





##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처 리 에 관 한 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 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나. 외자도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제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원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 4 조(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 5 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영 제31조제1항의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 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1부

3. 의향서 사본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구비서류가 불필요하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처 리 에 관 한 규 정

는 경우, 통일원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협력사업자의 방북)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 이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관계자가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 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와 같다.

-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2. 산업입지조건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1부  
(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등을 포함)
-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 9 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등) ①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추진일정 계획

-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마. 회사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남 북 경 제 협 력 사 업 처 리 에 관 한 규 정

-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카. 효력발생 조건
  - 타. 회사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원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음 각호와 같다.

1. 회사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등 제 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이내)
3. 회사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VIII.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3호





목 차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 1 조 목 적 .....121

제 2 조 사무소의 기능 .....121

제 3 조 사무소의 설치승인 .....121

제 4 조 승인요건 .....121

제 5 조 승인 처리절차 .....122

제 6 조 내용변경 신고 .....122

제 7 조 사무소의 폐지 .....122

제 8 조 유효기간 .....122

제 9 조 사무소 설치보고등 .....123

제10조 설치승인의 취소등 .....123

제11조 주재원의 북한방문 .....123

제12조 외국환의 사용 .....124

부 칙 .....124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 3 조(사무소의 설치승인) ①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의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승인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5 조(승인 처리절차) ①통일원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내용변경 신고) ①사무소를 설치한 후 그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사무소의 폐지) ①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유효기간) ①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상주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사무소 설치보고등) ①사무소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

발급하는 것에 한함)

6.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등)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승인의 취소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통일원장관은 사무소 설치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하“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후 증명서를 통일원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IX.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정 1995. 6. 28 재정경제원고시 제95-23호





# 목 차

##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 1 절 총 칙	제 3 절 북한지사
제 1 조 목 적 .....129	제14조 북한지사의 구분 .....133
제 2 조 용어의 정의 .....129	제15조 북한지사의 설치 .....133
제 3 조 적용범위 .....129	제16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133
제 4 조 투자의 방법 .....129	제17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133
제 5 조 적용규정 .....129	제18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134
제 2 절 법인설립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19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135
제 6 조 투자의 요건 .....130	제20조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135
제 7 조 투자의 신고 .....130	제21조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136
제 8 조 의견요청 .....131	제22조 북한지사의 폐지등 .....136
제 9 조 투자금의 송금등 .....131	제23조 현지금융 .....137
제10조 투자금등의 회수 .....131	제24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139
제11조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132	제25조 권한의 위임 .....139
제12조 보고서의 제출등 .....132	
제13조 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132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 1 절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 12장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 5 조(적용규정)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 2 절 법인설립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 6 조(투자의 요건)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 7 조(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 8 조(의견요청) 제6조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투자금의 송금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투자금등의 회수) ①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

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 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 11 조(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보고서의 제출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3 절 북한지사

제 14 조(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 15 조(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 18 조(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9 조(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 20 조(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 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①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후 20일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북한지사의 폐지등)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 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 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현지금융)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을 제17조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 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④북한 현지법인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재정경제원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 24 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일원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제1항의 보고 : 1월이내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제1항의 인증 : 1월이내
5. 제18조제5항의 허가 :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7.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8. 제22조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10.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  
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제 25 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원장관은 이지침 제13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생략>



## X. 남북협력기금법

### 1.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 2.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 3.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 목 차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제 1 조 목적 ..... 145	제 1 조 목적 ..... 145	제 1 조 목적 ..... 145
제 2 조 정의 ..... 145	제 2 조 기금의 재원 ..... 146	제 2 조 협의회 의결사항 ..... 151
제 3 조 기금의 설치 ..... 145	제 3 조 채권의 발행 ..... 147	제 3 조 경미한 사항 ..... 152
제 4 조 기금의 재원 ..... 146	제 4 조 채권사무의 취급 ..... 148	부 칙 ..... 163
제 5 조 장기차입 ..... 146	제 5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148	
제 6 조 삭제 <93.12.31> ..... 147	제 6 조 기금운용계획 ..... 149	
제 7 조 기금의 운용·관리 ..... 148	제 7 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 151	
제 8 조 기금의 용도 ..... 149	제 8 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 153	
제 9 조 기금의 회계기관 ..... 156	제 9 조 지원의 방법 ..... 156	
제10조 일시차입 ..... 158	제10조 비지정통화 ..... 156	
제11조 보고 및 환수 ..... 159	제11조 회계기관의 임명통지 ..... 156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 161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 157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161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 157	
제14조 감독 및 명령 ..... 162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 157	
부 칙 ..... 163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제15조 결산보고서 ..... 158 제16조 기금의 계리 ..... 159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 159 제18조 기금의 환수 ..... 160 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 161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 162 부 칙 ..... 163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li> </ol> <p>제 3 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p>	<p>제 1 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p>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p> <p>제 4 조 (기금의 자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 및 정부의의 자의 출연금</li> <li>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li> <li>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li> <li>4. 기금의 운용수익금</li> <li>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li> </ol> <p>제 5 조 (장기차입) 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할 수 있다.</p> <p>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p>	<p>제 2 조 (기금의 자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li> <li>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li> </ol>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p>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 6 조 삭제&lt;93.12.31&gt;</p>	<p>제 3조 (채권의 발행)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행의 이유</li> <li>2. 발행요청액</li> <li>3. 액면금액의 종류</li> <li>4. 소화계획</li> <li>5. 발행조건</li> <li>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제 7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p> <p>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통일원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p>	<p>참작하여 이를 정한다.</p> <p>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p> <p>제 4 조 (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 5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p> <p>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협의하여야 한다.</p> <p>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li> <li>2. 기금운용계획</li> <li>3. 결산보고사항</li> <li>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 8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li> <li>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li> </ol>	<p>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 6 조 (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 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p> <p>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 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비지정통화의 인수</p> <p>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 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의 지원</p> <p>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 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p>	<p>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li> <li>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li> <li>3. 자금사용계획</li> <li>4. 추정대차대조표</li> <li>5. 추정손익계산서</li> <li>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제 7 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2 조 (협의회의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이상의 지원</li> <li>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li> <li>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li> </ol>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p> <p>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p> <p>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p> <p>③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p>	<p>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5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p> <p>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5억원 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p> <p>6.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p> <p>7.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 3 조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한다.</p> <p>제 8 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미만의 지원</li> <li>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li> <li>4. 법 제8조제6호의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li> <li>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li> </ol>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제 9 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p>	<p>제 9 조 (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p> <p>제11조 (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공무원을 임명한다.</p> <p>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p> <p>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p> <p>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제10조 (일시차입) 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p> <p>제15조 (결산보고서)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제11조 (보고 및 환수) 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p>	<p>2. 손익계산서</p> <p>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p> <p>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p> <p>제16조 (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p> <p>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p> <p>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p>	<p>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8조 (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 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채·공채의 매입</li> <li>2. 재정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li> <li>3. 금융기관에의 단기에치</li> <li>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li> </ol> <p>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이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p>	<p>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원 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령	남 북 협 력 기 금 법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XI.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 17 통일원고시 제91-1호





# 목 차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b>제 1 장 총 칙</b>	
제 1 조 목적 ..... 171	제11조 지원의 우선순위 ..... 174
제 2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 171	제12조 지원한도 ..... 174
<b>제 2 장 기금의 관리</b>	제13조 지원절차 ..... 174
제 3 조 기금운용상황보고 ..... 171	제14조 지원통화 ..... 174
제 4 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 171	제15조 지원자금의 관리 ..... 175
제 5 조 위탁수수료 ..... 171	제16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 175
제 6 조 여유자금의 운용등 ..... 171	제17조 예외취급 ..... 175
<b>제 3 장 기금의 업무</b>	<b>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b>
제 7 조 업무의 종류 ..... 172	제18조 지원대상 ..... 175
제 8 조 채무의 조정 ..... 173	제19조 지원한도 ..... 175
<b>제 4 장 무상지원</b>	제20조 지원절차 ..... 176
<b>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b>	제21조 지원자금의 관리 ..... 176
제 9 조 지원대상 ..... 173	제22조 지원신청 변경 ..... 176
제10조 지원조건 ..... 173	제23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 176
	제24조 지원통화 ..... 177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5조 예외취급 ..... 177

제 5 장 손실보조

제26조 손실보조의 대상 ..... 177

제27조 보조할 손실의 범위 ..... 178

제28조 배당금 손실의 인정 ..... 178

제29조 손실보조 약정절차 ..... 178

제30조 업무취급 수수료 ..... 178

제31조 손실보조약정의 효력 ..... 179

제32조 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 179

제33조 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 179

제34조 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 179

제35조 손실보조신청 ..... 180

제36조 손실보조금 지급 ..... 180

제37조 면책 ..... 180

제38조 손실보조약정 해지등 ..... 180

제39조 손실보조금의 반환 ..... 180

제40조 대위권 ..... 181

제41조 회수금 통지 ..... 181

제42조 회수금의 납부 ..... 181

제43조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 181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제44조 대출대상 ..... 182

제45조 대출비율 ..... 182

제46조 대출조건 ..... 182

제47조 사전협의 ..... 183

제48조 대출절차 ..... 183

제49조 사업보고 ..... 183

제50조 대출금 상환 ..... 183

제51조 대출조건 변경 ..... 184

제52조 예외취급 ..... 184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등

제53조 반출·반입자금대출 ..... 184

제54조 결과보고 ..... 184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제 7 장 채무보증

제55조 보증대상 ..... 185  
 제56조 보증조건 및 방법 ..... 185  
 제57조 보증절차 ..... 186

제 8 장 금융기관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58조 손실보전 대상 ..... 186  
 제59조 손실보전 신청등 ..... 186  
 제60조 보전이자율등 ..... 187

제 2 절 금융기관융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 지원대상 ..... 187  
 제62조 지원절차 ..... 187  
 제63조 지원조건 ..... 187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 북한원화의 인수신청 ..... 188  
 제65조 인수조건등 ..... 188  
 제66조 북한원화의 환전 ..... 188

제 9 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제67조 지원대상 ..... 188  
 제68조 지원방법 및 절차 ..... 188  
 제69조 지원금액·지원조건 ..... 188

제10장 보 칙

제70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 188  
 제71조 기금의 출연 ..... 189  
 제72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 189  
 부 칙 ..... 189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위탁수수료) ①통일원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 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

(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통일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 제 4 장 무상지원

###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환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 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 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신청 변경)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변경되는등의 경우 제20 조제1항의 신청인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지원방침 결정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감액지급, 지급액 의 환수, 지급액의 일시환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 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 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

##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출발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 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 제 5 장 손실보조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납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손실

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에 당해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1부에 승인하는 뜻을 기재·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의 교부전에 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손실보조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교류·협력관련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 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90범위이내로 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형식

- 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당해 관련계약이 원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이 분할집행되는 경

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2.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 가. 이자율은 연5%로 한다.
- 나.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상환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 다. 이자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금의 분할집행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선취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4. 원금상환방법

원금은 연1회이상 정기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5. 담 보

-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47조(사전협의) ①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사전 협의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필요성등에 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

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빙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제46조제3호의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46조제2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51조(대출조건 변경)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조건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에 준하여 대출조건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52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거래의 특성, 긴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

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등

제53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통일원장관은 반출·반입자금대출의 조건등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

##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 7 장 채무보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 보
  -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58조(손실보전 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경비

제59조(손실보전 신청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0조(보전이자율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용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북한원화매매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인수조건등)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6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원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제67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남 북 협 력 기 금 운 용 관 리 규 정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71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

